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2. 23 선고 2021나18299 판결 [사해행위취소 및 투자수익금 청구 등]

재판경과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2. 23 선고 2021나18299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2. 24 선고 2019가단5271107 판결

전 문

원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너스

담당변호사 이해권

피고, 피항소인 주식회사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정송

담당변호사 육현창, 이기동, 박정훈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임혜림

변론종결 2021. 11. 23.

판결선고 2021. 12. 23.

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2. 24. 선고 2019가단5271107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7. 24. 체결한 각 신탁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2018. 7. 24. 접수 제7499호로 마친,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75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(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와 C 사이의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은 타당하다).

2. 결 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정 원, 판사 김유성, 판사 최은주

별지